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희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49
----------	------

발의 년 월 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성희제 의원(1명)
찬성자: 강석주, 김경, 김규남,
김성준, 김영철, 김원태,
민병주, 박수빈, 박승진,
박칠성, 송도호, 오금란,
왕정순, 유정희, 이민옥,
이영실, 이용균, 임규호,
최재란, 한신, 허훈,
홍국표 의원(22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관광약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여전히 사업 단위 중심에 머물러 관광지 간 연계성, 접근성 정보 공개, 시설 유지관리 등 현장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 특히, 관광지별로 개별 개선은 이뤄지고 있으나 이동 동선의 단절, 교통 접근성 부족, 정보 미공개 등으로 관광약자가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또한, 관광약자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정기적인 점검·유지관리 체계가 미비하여 형식적 조성에 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관광약자의 관광 접근성 정보 공개 및 관리, 무장애 관광시설의 유지관리, 민간협력체계 구축, 정기평가 및 결과 공개 등을 보완함으로써, 실질적인 관광복지 향상과 포용적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광지원기본계획에 관광접근성 정보 공개 및 관리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4조 제1항 제6호 신설).
 - 나. 무장애 관광시설이 설치된 경우,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 조항을 둠 (안 제5조의2 제2항 신설).
 - 다. 민간참여 촉진 조항에 필요시 관광약자 지원 협의체 구성 · 운영 가능 근거를 보강함 (안 제6조 단서 신설).
 - 라. 관광약자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 ·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 또는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의2 신설)
-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에 관한 법률」
- 다. 기타 : 신 · 구조문대비표 첨부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접근성에 관한 사항

제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설치된 무장애 관광시설의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시 관광약자 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실적평가 및 보고) 시장은 관광약자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거나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광약자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
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
의회에 보고하거나 시민에게 공
개할 수 있다.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장애 관광시설의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장의 노력의무를 규정하여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의 실효성을 확보¹⁾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또한 안 제9조(실적평가 및 보고)은 노력의무규정으로 비용발생 가능성이 낮고, 만일 점검평가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기존 자원을 활용(약자동행지수 등)하여 추진 시 추가 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현

추계분석관 손재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

1)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 고려] 서울시 관련부서(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및 공원여가센터 등) 및 서울문화재단 문의결과 서울시에서 무장애 관광시설 명목으로 별도로 설치한 시설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관광지적 성격이 강한 일부 공원(남산공원 등)이 무장애 천화공원으로 조성된 바 있으나, 이는 현재 공원 유지관리 비용으로 시설점검 등을 기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점을 고려할 시 해당규정에 의한 별도의 추가비용 발생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